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김 현 응

법무부장관

●법률 제1417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 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 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에”를 “수사기관에 즉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 자”를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성폭력피 해상담소 및”을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종사자”를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6조에 따른”을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10조”를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 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 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9조제5호”를 “제19조제1항제5호”로, “보조인”을 “변호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62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2년”을 “5년”으로, “7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제66조의2)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제10조의3)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김 현 응

법무부장관

●법률 제141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